

## 계좌및서비스에관한기본약관에 대한 국가별부록 변경 안내문

항상 한국씨티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계좌및서비스에관한기본약관에 대한 국가별부록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 안내문 게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
1. 약관명 : 계좌및서비스에관한기본약관에 대한 국가별부록
2. 시행일 : 2024년 3월 15일 (금)
3. 변경사항 기존 고객 적용 여부 : 적용
4. 변경사유 :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 반영
5. 변경 내용 :

구분	현행	개정
부 칙	<p>1.제 18 조 제 3 항의 계좌유지수수료는 2017년 3월 8일 이후 한국씨티은행과 처음으로 거래하는 고객이 개설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에 적용됩니다.</p> <p>2.2020.06.05.에 이루어진 공정거래위원회 예금거래 기본약관(표준약관 제 10012 호) 개정에 따라 제 7 조, 제 9 조, 제 9 조의 2, 제 10 조, 제 12 조, 제 14 조, 제 17 조, 제 21 조를 2020.09.07.부터 개정 시행한다.</p> <p>3.계좌및서비스에관한기본약관(MAST) 7.3 의 상계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</p> <p>4.본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</p>	<p>1.제 18 조 제 3 항의 계좌유지수수료는 2017년 3월 8일 이후 한국씨티은행과 처음으로 거래하는 고객이 개설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에 적용됩니다.</p> <p>2.2020.06.05.에 이루어진 공정거래위원회 예금거래 기본약관(표준약관 제 10012 호) 개정에 따라 제 7 조, 제 9 조, 제 9 조의 2, 제 10 조, 제 12 조, 제 14 조, 제 17 조, 제 21 조를 2020.09.07.부터 개정 시행한다.</p> <p>3.계좌및서비스에관한기본약관(MAST) 7.3 의 상계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</p> <p>4.계좌및서비스에관한기본약관(MAST) 제 7.4 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: "7.4 은행은 계좌가 해지되기 전까지 고객이 이용하고 있는 계좌, 상품, 서비스와 관련한 수수료, 이자, 또는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해당 계좌 또는 다른 계좌(만기를 정한 정기예금 등 예금 상품 중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)에서 출금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은행은 오류로 인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."</p> <p>5.본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</p>
	<p>※ 참고: 변경 전 계좌및서비스에관한기본약관 (MAST) 제7.4조</p> <p>서면으로 달리 약정하지 않는 한, 은행은 계좌가 해지되기 전까지는 모든 종류의 계좌 또는 은행에 대한 지불 의무와 관련한 수수료, 이자, 또는 은행에 지불되어야 하는 기타 금액을 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은행은 오류로 인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.</p>	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